

2016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1. 보상위원회

##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 10 조 제 1 항을 그 근거로 하여 2015 년 3 월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만료 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16 년 말 기준, 임기 2 년을 초과 재임한 위원은 없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규정 제 9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

### (1) 총괄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상위원회규정 제 3 조 및 제 4 조에 의거 2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인 위원을 위원장로 하고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6 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 3 인(민정기, 류승헌, 디디에 뚜슈)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 인(류승헌, 디디에 뚜슈)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류승헌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류승헌 사외이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IR 관련 분야, 디디에 뚜슈 사외이사는 BNPP AM 에서 리스크 관리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이 두 사외이사는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들로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류승헌 사외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2016 년 12 월 이사회 이전까지는 김임근 사외이사와 전영교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디디에 뚜슈 사외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2016 년 2 월 이사회 이전까지는 빈센트 까멜링크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 년 2 월 이사회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민정기	위원	상임이사	유	(現)신한 BNPP 자산운용 대표이사
전영교	위원장	사외이사	유	(現)신한금융지주 본부장
빈센트 까멜링크	위원	사외이사	유	(前)BNPP I.P. Asia H.K. CEO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6년 08월 1일 신설 / 세부 약력은 15~19 페이지 참고

<2016년 2월 3일 이사회 이후 ~ 2016년 12월 15일 이사회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민정기	위원	상임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現)신한 BNPP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임근	위원장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現)신한금융지주 본부장
디디에 뚜슈	위원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BNPP AM. Market Risk APAC&Emerging Head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6년 08월 1일 신설 / 세부 약력은 15~19 페이지 참고

<2016년 12월 15일 이사회 이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민정기	위원	상임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現)신한 BNPP 자산운용 대표이사

류승헌	위원장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現)신한금융지주 본부장
디디에 뚜슈	위원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BNPP AM. Market Risk APAC&Emerging Head

※ 세부 약력은 15~19 페이지 참고

##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민정기	상임	대표이사	2016.03.30	2017 개최 정기주총
류승헌	사외이사	위원장	2016.12.15	2017.12.31
디디에 뚜슈	사외이사	-	2016.02.03	2017 개최 정기주총
김임근(사임)	사외이사	위원장(전)	2016.03.30	2016.10.25

## 다. 권한과 책임

### (1) 총괄

보상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 년 3 월 30 일 개최된 제 21 기 제 1 차 보상위원회에서 다음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015 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 의 건
- 2016 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안) 확정 의 건
- 2016 년도 경영진 보수 및 수당 결정 의 건
- BNPP(제휴파트너)와 협의 후 선임한 경영진의 2016 년도 보수 및 수당 결정 의 건
- 2015 년도 연차보상 평가 의 건

경영진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보수 및 지급방식은 아래 보수의 세부정보와 같이 의결하였으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경영진에 대한 보수 체계 정비 및 적용 후 점진적으로 그 해당자와 보수 체계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 년 8 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상위원회 규정에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결의 사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동 규정을 근거로 보상위원회는 추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당사 및 금융투자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 년 3 월 30 일 개최된 제 1 회 보상위원회에서 회사의 보상체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항목에 대해 운영 현황을 리뷰하고 적정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 보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 보상제도의 설계 원칙 준수
- 변동보상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 지표

특히 시행 초기인 보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주요 업무 수행 여부, 보상의 설계 원칙 준수 여부,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변동보상제도 운영, 성과평가 지표 등을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보상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정된 보상위원회규정에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년 3월 30일 개최된 제 1회 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 등의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6년 3월 30일 개최된 제 1회 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8) 보상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당사 보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확정에 관한 사항
-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상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 지주회사 보상위원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기 사항은 당사 국내외 모든 사업부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2016년 3월 30일에 개최한 제 1차 보상위원회에서 당시 지배구조 모내부규범에서 정한 특정업무 종사자의 범위 및 변동보상 대상자를 경영진운영규정에 따른 경영진으로 하며, 추후 본부장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정 제 6조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임원을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우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16년 12월말 기준 임원은 대표이사 사장 1명, 부사장 2명 등 총 3명(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제외)이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현재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3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검토중	-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현재 류승헌 사외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 일전에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목적 사항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회사내 보상위원회 지원 부서를 통해 각 위원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2016 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 (2)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3 번의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각 일자별 참석 위원과 결의 안건 그리고 결의 여부는 아래 개최 내역으로 상세 기술하였습니다.

## (3) 회의 개최내역

### (가) 제 1 차 보상위원회

2016 년 3 월 30 일 [안건 통지일 : 2016 년 3 월 28 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민정기	김임근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2015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의 건)	-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호 안건 (2016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안) 확정의 건)	-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호 안건 (2016년도 경영진 보수 및 수당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호 안건 (2015년도 연차보상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상위원회규정 제 7 조 제 2 항)

#### (나) 제 2 차 보상위원회

2016 년 6 월 2 일 [안건 통지일 : 2016 년 5 월 26 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민정기	김임근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제휴파트너인 BNPP와 협이하여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선임한 경영진에 대한 2015년도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 의 건)				
나. 제2호 안건 (제휴파트너인 BNPP와 협의하여 선임한 경영진에 대한 2016년도 보수 및 수당 결정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3 차 보상위원회**

**2016 년 12 월 15 일 [안건 통지일 : 2016 년 11 월 25 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민정기	류승헌	디디에 뚜슈	
1. 위원 성명	민정기	류승헌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2016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체계 일부 변경 승인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상위원회규정 제 7 조제 2 항)

**(4) 평가**

보상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 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제도 도입 승인을 '16년 12월 제21기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7년도 1월에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보상위원회는 동 평가에서 4등급(우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시간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의 범위·깊이 적정성, 당사로부터의 적기에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되며, 이 평가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당사는 매년 초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 2. 보수체계

### 가. 주요사항

####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회사 전체 성과 측정시 수익성 지표(영업순이익, 영업이익경비율 등), 외형 지표(시장 지위, 특정 채널 판매액 등), 고객자산운용성과(유형별 운용 수익률 등)를 주요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업적 평가(그룹 KPI 달성도, 회사 KPI 달성도, 담당업무 KPI 달성도, 담당업무 전략과제 등) 및 상급자·동료·하급자 대상 다면평가 등 역량평가 점수를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전항 영업순이익, 영업이익경비율 등 재무성과, 고객자산운용성과 등의 지표를 활용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경영진의 개별 담당업무 KPI 및 비계량부문의 전략과제 이행률 등을 통해 이를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당사는 직원 성과급 재원 중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98%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으로 4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은 2015년부터 경영진의 변동보상에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는 장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고,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 시점의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 보상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보상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53 조 등에서 재무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 등의 성과보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3 조 제 5 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보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지급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상의 일정비율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개인 성과 달성률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 부여수량이 조정되며, 단기 성과보수의 경우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달성률 구간에 따라 성과급 지급 비율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상의 경우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환수 되거나 유보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환수 사유

-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한 경우
-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해임권고 등으로 해임되거나 면직될 경우
- 장기 보상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 장기 보상을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장기 보상이 압류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나 손해를 초래할 경우
- 금융감독기관의 감봉 또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주요 유보 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받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사회에서 해당 경영진 등에 대해 지급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당사는 2015년부터 경영진의 변동보상에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는 장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 시점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 및 활동수당 등으로 분류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 등 업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인센티브는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 비율은 전체 보수액 중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해당 업무의 투자성, 시장 보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수(임직원 단기성과급)와 주식보수(임원 장기성과급, 직원 ESOP)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는 임원의 경우, 변동 보상을 연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현금 보상인 연간성과급과 4 년간 회사 장기성과 및 지급시점 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주식 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연간성과급은 회사 성과, 손익규모의 증감, 개인별 업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Pool 산정 및 배분을 하며, 장기성과급은 매년 직위별 기본급의 일정 비율의 수량을 부여한 뒤 4 년간 회사 성과 및 주가, 손익규모 증감 등에 따라 그 수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변동 보상을 연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현금 보상인 연간성과급과 주식 보상인 ESOP 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직원 변동 보상은 회사 KPI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현금 보상 Pool 의 5%를 ESOP Pool 로 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성과보수액 중 연간성과급은 연간 성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재원으로 익년도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장기 성과급은 4 년간의 회사의 장기성과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주식 보상 제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공유라는 취지하에서 ESO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급 중 일부를 당사 주식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6 년 약 3 억의 주식을 경영진 등을 제외한 전체 정규직 직원에게 배분하였습니다.

#####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경영진 등 이외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회사 손익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정 제 8 조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6 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59 조에 의거하여 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6 년 7 월 28 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기존 보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해 선임될 수 있게 하였고, 기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규정들을 모두 개정하였습니다.

### **나. 보수 세부사항**

#### **(1) 임직원 총보수**

당사는 임직원 총보수 관련하여 추후 보상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당사는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관련하여 추후 보상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관련하여 추후 보상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수의 형태 관련하여 추후 보상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액 보수 구분 관련하여 추후 보상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액 형태별 구분 관련하여 추후 보상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액 보수 구분 관련하여 추후 보상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6) 이연보수의 조정**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 조정 관련하여 추후 보상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당사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관련하여 추후 보상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첨부 1.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정관

## 정 관

개정 : [2009. 1. 02]  
개정 : [2009. 6. 12]  
개정 : [2010. 6. 30]  
개정 : [2012. 4. 15]  
개정 : [2012. 6. 21]  
개정 : [2015. 3. 03]  
개정 : [2016. 8. 01]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신한비엔피파riba 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 Ltd.”라 표기한다.

#### 제 2 조 (사업의 목적)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자문업무
  2. 투자일임업무
  3. 투자매매업무(인수업 포함)
  4. 투자중개업무
  5. 집합투자업무
  6. 회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② 회사는 인·허가권자의 인·허가를 얻거나 필요한 등록, 신고, 보고 등을 완료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4 조 (광고방법)

- ①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위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② 관련법률 또는 본 정관에 따라 직접 행하거나 발송을 요하는 (광고 이외) 모든 통지와 보고는 우편 또는 선납등기우편, 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영문으로 행하되 국문 번역본을 첨부한다.

## 제 2 장 주 식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육백만(36,000,000)]주로 한다.

###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5,000)원으로 한다.

###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6,000,000)주로 한다.

###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1)주권, 오(5)주권, 일십(10)주권, 오십(50)주권, 일백(100)주권, 오백(5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일십만(100,000) 주권의 9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기타 단위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 9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③ 회사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신주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권리의 행사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0 조 (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및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회사에서 정하는 사규에 의한다.

###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일의 익일부터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동의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주 주 총 회

### 제 14 조 (종류 및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5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대한민국의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주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로 동의하는 경우 위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 제 17 조 (소집지)

주주총회의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사회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외의 장소를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로 정할 수 있다.

### 제 18 조 (의 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9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2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정족수 및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의 3이상의 수로 하되 의결권 있는 모든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의결권 있는 모든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
  1. 회사 영업의 범위나 성격의 변경, 신규 영업의 추가
  2. 회사의 정관의 변경
  3. 회사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4. 제3자와의 중요한 합작, 제휴 또는 제3자에 대한 기술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5. 통상적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계약 체결 또는 업무의 집행
  6. 일십억원을 초과하는 자산 또는 영업의 취득 또는 처분
  7. 일십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
  8. 총금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차입 (여하한 형식의 자금조달)
  9. 회사의 연간 예산(핵심 임원에 대한 보수 정책, 급여, 상여금 포함) 및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10. 당해연도 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주식, 보고서 등을 포함한 법령상 요구되는 기타 재무제표의 승인
  11. 배당정책의 수립 및 변경, 이익배당 및 이익분배의 승인 및 지급
  12. 회사와 BNP Paribas 그룹 또는 신한금융그룹 사이의 중요한 거래, 계약 및 그 중요한 변경
  13. 외부감사인의 선임이나 교체
  14. 신주의 발행
  15. 합병
  16. 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점의 설치
  17.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승인
  18. 기존에 존재했거나 새로 체결되는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 또는 그에 관한 중대한 변경
  19. 분쟁금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는 제3자가 연관된 법적 소송이나 중재, 행정적 또는 규제적인 절차의 개시, 협상, 화해; 또는 정부 당국과 관련된 위 절차들(이는 분쟁금액 액수에 관계 없음)의 개시, 협상, 화해
  20.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
  21.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 제 22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 제 4 장 이사·이사회·감사위원회

### 제 23 조 (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6인으로 한다. 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사의 수 이상의 홀수의 수로 한다.
- ② 사외이사는 전체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사임 등의 사유로 본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에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 25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2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로의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자회사 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 제 27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신규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 28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 29 조 (대표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0 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1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대표이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이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의 10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동 기간은 모든 이사의 (우편, 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에 의한) 서면동의에 의하여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시기와 장소는 대표이사가 정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화상회의를 포함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 제 3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주요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며, 이사회는 그 결의로 다른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법령,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3 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제 34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이사 6명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6명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제 2항의 결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 제 35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 제 36 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37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제32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 경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제 1항에 정한 요건에 합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수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할 수 있다.

### 제 38 조 (감사위원회의 역할)

-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 선임에 대하여 승인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

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9 조 (결의방법)**

- ① 감사위원회는 감시위원 4/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0 조 (부회장 등)**

회사는 부회장,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 41 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회사는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그 임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 42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회사는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공표한)에 따라 조정한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는 이러한 회계장부, 기록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회사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2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차기이월액
6.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제 45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가 결의하는 경우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단, 주식에 의한 배당에 관련된 주식의 총액면가는 당해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46 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단,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사업연도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47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제 6 장 보 칙

#### 제 48 조 (규 정)

회사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중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 제 49 조 (상법 및 금융투자업 관련법령의 적용)

본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상법 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 50 조 (언 어)

본 정관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동등한 정보으로 한다. 단, 의미의 차이가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 부 칙 ([2009. 1. 2.]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2조의 규정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단위에 대한 등록 및 인가가 발효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는 본 개정 전 정관(2005. 6. 30.자 신한 비엔피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것)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8조의 경우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2.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주) 이사회규정

### 이사회규정

제정 2009.01.02

개정 2009.06.12

개정 2010.06.30

개정 2012.06.21

개정 2012.12.18

개정 2014.09.25

개정 2015.03.03

개정 2016.08.01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4 조(경영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영진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이하 "이사인 경영진"이라 한다)와 이사 아닌 자 중 이사회 동의 얻어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로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하 "이사 아닌 경영진"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 5 조(역할)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경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 6 조(선임 및 해임)

- ① 대표이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7 조(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제 8 조(이사의 권한 및 의무)

-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및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가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 9 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성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제 4 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제 10 조(이사회내위원회)**

- ①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④ 제 14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11 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권자가 소집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소집한다.
- ② 제 1 항의 소집권자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는 그 이사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에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우편, 팩시밀리 전송, 전자메일 등 송수신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사회 개최일 10 일 전에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사전 동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이 조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제 12 조(의안의 배부)**

- ① 이사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최소 7 일전에 전 이사에게 배부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최소 7 일전에 위원회 각 구성원 및 기타 위원회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의 배부 방식은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 송신, 전자메일 송신 등 송수신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1 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안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 **제 13 조(결의사항 등)**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A.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B. 주주총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A. 정관
  - B. 이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 C. 지배구조 내부규범,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퇴직위로금규정,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 3.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A. 신주의 발행
  - B.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 전입
  - C. 실권주 및 단주 처리에 관한 사항
- 4. 경영의 기본에 관한 사항
  - A. 경영의 기본 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B.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C. 경영진의 평가지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D.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E. 점포의 이전 및 폐쇄
  - F. 자본시장법상의 신규사업에의 진출
  - G. 이사 아닌 경영진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H. 위원회의 설치, 개폐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5.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A. 업무용 동산, 부동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 B. 1 건당 5 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단,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직전 계약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 C. 1 건당 3 억원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
  - D.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 E. 기타 중요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6.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A. 사외이사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 B.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 C.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위의 결정
  - D.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결정
- 7. 기타 사항

- A. 감독기관의 인·허가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차입
  - B.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C. 주주총회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D.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E.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F.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G. 대표이사가 특별히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H.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② 대표이사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 2.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그 실적분석
- 3.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4. 경영성과, 분석 및 현황
- 5.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제, 개정을 통해 권한 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 제 14 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6 명중 5 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 6 명중 5 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제 1 항의 결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15 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이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관계자의 출석)**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7 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보수 등)**

이사회 이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년 12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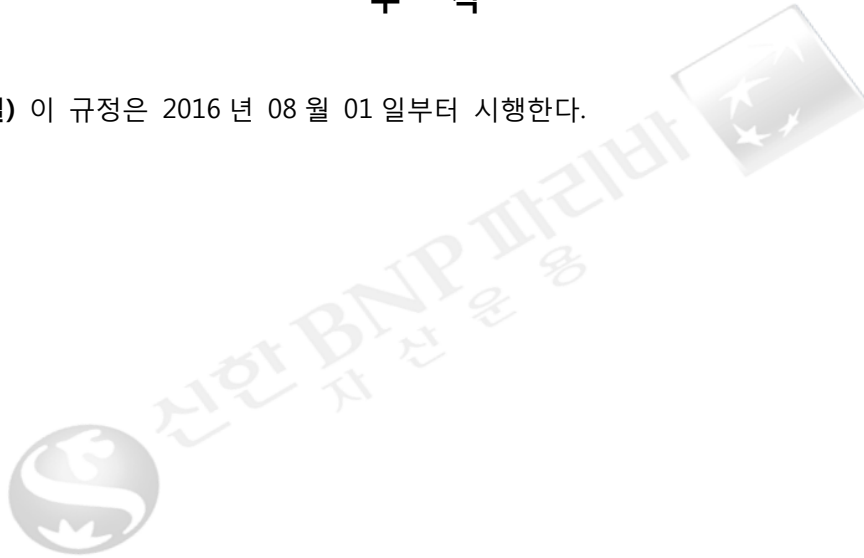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년 09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년 03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08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3.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2015. 03. 03

개정 2016. 08. 01

개정 2016. 09. 22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규범은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라 함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주사"라 한다)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을 말한다.
2. "자회사"라 함은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4. "상법상 회사"란 「상법」 제 169 조의 회사(「상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6.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7. "사외이사"란「상법」제 382 조 제 3 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8. "겸직 비상임이사"란 그룹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9.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대표이사·회장·은행장·사장·부사장·부사장보·부행장·부행장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및 자회사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1.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 390 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 393 조의 2 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12. "경영진"이란 임원 중에서 사외이사과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3.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 판매 ·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상위원회가 심의 · 의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14. "성과보상"이란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15.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 61 조 제 1 항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6.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 61 조 제 2 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의 보상지급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7. "준법감시인"이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 2 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 제 1 절 이사회

#### 제 3 조(이사회)의 구성

- ①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회는 6 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 중 사외이사는 4 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 조(이사회 의 권한 및 책임)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 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이사회규정에 명시된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그 실적분석
3.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경영성과, 분석 및 현황
5.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④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의 제·개정을 통해 권한 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 제 5 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②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제 6 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10 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7 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이사 6 인 중 5 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 6 인 중 5 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제 1 항의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8 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이사회는 연 1 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2 절 이사회내위원회**

#### **제 9 조(이사회내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1. 감사위원회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 보상위원회
  - 4. 리스크관리위원회
- ② 이사회내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제 1 항 각호 중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 ③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내위원회는 연 1 회 해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10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 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 1 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 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제 11 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 인을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 4 항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 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12 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2. 회사의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 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3 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보상위원회는 2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보상위원회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
5.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

④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⑤ 회사는 임원 및 직원(최하위 직급의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하여 보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상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보상 중 성과보상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 할 것
2. 경영진(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상의 일정 비율 이상을 3 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 다만, 담당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 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3. 제 2 호에 따라 성과보상을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할 것
4.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상의 일정 비율 이상은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 **제 14 조(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상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장 이사 및 최고경영자**

#### **제 1 절 이사**

#### **제 15 조(이사의 선임 및 퇴임)**

- ①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④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⑤ 비상임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⑥ 주주총회는 이사가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

#### **제 16 조(이사의 자격요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소비자 보호, 정보기술, 회계 및 법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회사 외의 2 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 36 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제 17 조(이사후보 추천절차)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 제 18 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와의 관계

5. 관계법령 및 제 16 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 19 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1. 사외이사 :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2.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 : 3년 이내
- ② 제 1 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③ 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제 24 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종료일로부터 2 회째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선임되더라도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제 4 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지주사 및 지주사의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퇴임 후 2년 이내에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 20 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 ① 회사는 사외이사 총 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 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 수를 말한다)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전단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1 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 22 조(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23 조(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 1 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한다.

③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및 자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사가 제 5 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 한도는 1 억원으로 한다.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그룹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 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 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 제 24 조(이사에 대한 평가)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2 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2 년에 1 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이사회는 제 1 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을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④ 제 2 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할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하되, 회사와 최근 3 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 ⑤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 1 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⑥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⑦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본 규범 제 42 조를 따른다.
- ⑧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5 조(이사의 보수)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한다.
-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회의 수당, 참가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 43 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주사 및 제휴 파트너인 BNPP 임직원인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26 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관리 담당 부서가 사외이사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② 경영관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 5 조 제 2 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제 11 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제 27 조 및 제 28 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경영관리 담당 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 2 항 제 2 호 중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한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 제 27 조(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 ② 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일 2 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 28 조(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 29 조(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임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경우
- ② 회사는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제 2 절 최고경영자**

**제 30 조(최고경영자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한다.

**제 31 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내부규정은 지주회사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제 1 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 32 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경영기획실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제 33 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①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②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 34 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지주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지주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 35 조(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은 경영진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4 장 경영진에 관한 사항

## 제 1 절 경영진의 자격요건

### 제 36 조(경영진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대표이사 사장은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대표이사 사장이 아닌 경영진은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통해 회사의 건전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 2 절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 제 37 조(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 의 운영(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2. 주주,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
  3.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과의 조정 역할
  4.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 ② 대표이사 사장 이외의 경영진은 대표이사 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 ③ 경영진은 이사회와 이사회내의 각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 3 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과 관한 기준 및 절차

#### 제 38 조(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 ① 대표이사 사장은 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이 아닌 경영진은 주주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회는 자질,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경영진 직위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1. 법규, 정관, 내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와 경영진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서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 제 39 조(업무대행자 선임 등)

- ① 대표이사 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외의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사장이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0 조(임기)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대표이사 사장이 아닌 경영진의 임기는 2 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한다.

#### 제 4 절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 제 41 조(경영진 등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활용)

- ① 회사는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략, 리더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시 고려한다.

#### 제 5 절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제 42 조(경영진의 성과평가)

- 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담당업무 성과 외에 회사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상의 지급이나 재선임 또는 해임시에 활용한다.

##### 제 43 조(경영진의 보상)

- ① 경영진의 보상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의 보수는 연봉(기본급, 단기성과급)과 활동수당으로 하며, 보수와는 별도로 성과연동형 장기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5 장 감사위원회

##### 제 44 조(기본원칙)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 제 45 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제 46 조(감사보조조직)**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 부서를 둔다.

② 감사업무 담당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 업무 담당 부서를 운영한다.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7 조(상근감사위원)**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통할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제 48 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1 회 이상 감사실시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9 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 6 장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등

### 제 50 조(기본원칙)

- ①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상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성과보상 지급으로 회사 및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성과 연계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임직원의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 제 51 조(보상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상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 제 52 조(보상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상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 53 조(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상 중 성과보상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한다.
- ②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을 성과보상으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설계한다.

#### **제 54 조(이연지급)**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상은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당부분을 수년간 이연지급하며, 특히 최고 경영진과 고액연봉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하는 성과보상의 비율을 상당수준 이상으로 한다.

② 이연지급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추속할 수 있다.

③ 이연지급시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 보다 작도록 한다.

#### **제 55 조 (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상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제 56 조(현금보상 지급 등)**

① 이연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제 57 조(보상체계 재조정)**

회사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상체계를 건전한 리스크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할 수 있다.

#### **제 58 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 제 59 조(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을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 60 조(성과평가 지표)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1. 단기적인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경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금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 제 6 장 공시

### 제 61 조(정기공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배구조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 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라.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마.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와의 관계

바. 법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카. 경영관리 담당 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타.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주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 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6. 지주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주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지주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최고경영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등 최고경영자 선임 기준
  - 라. 최고경영자 후보자와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에 따른 최고경영자 자격 요건 충족 및 근거
  - 바.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7.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감사위원 업무 수행 평가방식 등 감사위원 선임 기준
  - 라. 감사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령에 따른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 8.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 9.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 10.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 11.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 1. 보상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 체계의 주요 특성
    - 3. 회계연도 중 보상액(기본급 및 성과보상을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수를 포함한다)
    - 4. 성과보상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5. 이연된 성과보상(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6. 이연된 성과보상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7.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상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8.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액, 직급별 보상액 및 성과보상액
- ③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 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④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 62 조(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제 14 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 제 63 조(주주총회)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제 64 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제 65 조(규준 미준수에 대한 공시)

회사는 이 규범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법령상의 특례적용 사유, 주주총회 의결 사유 등 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한다.

## 제 7 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 제 66 조(내부통제체제)

- 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주사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 제 67 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 ③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제 68 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1 항 각 호 및 제 2 항 가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 3 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 5 호의 2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 36 조의 3 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제 69 조(리스크관리체제)**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주사 그룹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 **제 70 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③ 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제 71 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 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제 72 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자회사등의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 73 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다.
-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제정)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년 03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적용례 등)

- ① 제 19 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범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 19 조 제 4 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 19 조 제 5 항, 제 6 항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 20 조에 따른 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한다.
- ④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 23 조 제 7 항 제 1 호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제 3 조(폐지규정)** 이 규범의 시행과 동시에 「사외이사운영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08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09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4.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주) 감사위원회규정

### 감사위원회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015.3.3 개정)
-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4.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

##### 제 4 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녹취, 물품 등에 대한 실사 및 봉인 요구
4. 거래처에 대한 회계관계 제반자료 요구
5.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요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 6 조 (독립의 원칙)

- ①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으로부터 자문, 기타 보상적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2015.3.3 개정)

## 제 7 조 (보고 등)

- ① 위원회는 매년 1 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 한다
- ④ 위원회는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6.8.1 개정)



## 제 2 장 구 성

### 제 8 조 (선임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3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15.3.3 개정)
- ② 위원회의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 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제 9 조 (위원장 및 간사)

- ① 위원장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유고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009.6.12 개정)
- ④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이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2009.6.12 개정)
- ② 상근감사위원이 제 1 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감사위원회 간사 또는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2009.6.12 신설)
- ③ 제 16 조의 위임사항 및 위원회가 위임을 결의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이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2009.6.12 개정)
- ④ 일상 감사대상 이외의 문서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중요한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2009.6.12 개정)

**제 3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당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 3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을 못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는 감사위원 4/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009.6.12 개정)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009.6.12 개정)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할 수 있다. (2012.6.21 개정)
- ④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부의사항 등)**

- ① 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요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마.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
    -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 실시와 관련한 위임 사항
    - 다.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승인
    - 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4. 기 타
    -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
    -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 라.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2. 기 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 4 장 감사 및 보고

### 제 16 조 (감사의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9.6.12 개정)

1. 연간감사계획에 의한 세부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통할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제 17 조 (준법감시인관련 사항)

① 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1.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2. 기타 관계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

②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 18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 상근감사위원은 제 16 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2016.8.1 개정)

## 제 5 장 보 칙

### 제 19 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0 조 (감사보조조직)

- ① 회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감사부서를 둔다.
- ② 감사부서는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감사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부감사절차 등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21 조 (감사업무 외부위탁시의 특칙)**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본다.

**제 22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 2016. 08. 0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제3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소집)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대표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제7조(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등)**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계 법규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신이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이 규정은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보상위원회규정

제 정: [2015. 03. 03]

개 정: [2016. 08.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평가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수립, 운용되도록 관리한다.

###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 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소집)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

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 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 조의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말한다)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상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6.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7. 지주회사 보상위원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8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부 칙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신한 자산 운용  
SHINHAN ASSET MANAGEMENT



##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 정: [2016. 07. 28]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기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제 3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2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 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 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 조의 상법상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 제 4 조 (소집)

- ① 위원회는 분기 1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소집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결의(보고 포함) 할 수 있다.

### 제 5 조 (심의·의결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결의한 사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제 6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7 조 (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8 조 (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9 조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 검토보고서

성 명	총 합 의 건
김임근	적합
리지아 토레스(Ligia TORRES)	적합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민 정 기 (서명 또는 날인)

후보자	김임근	소속법인	신한금융지주회사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현직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현직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전문 분야 - 금융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	----------------------

후보자	리자아 토레스	소속법인	BNPP I.P. U.K.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현직 BNPP I.P. U.K. 임직원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현직 BNPP I.P. U.K. 임직원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전문 분야 - 금융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TEL: 02-767-5777

[www.shbnppam.com](http://www.shbnppam.com)

